

2025년도 제1회 업무직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제1회 업무직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응시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4일
화성도시공사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직종	업무분야	모집인원	임기	연봉(만원)	시험방법	근무예정지
총계			3명		2025년 기준, 제수당 별도		
공개경쟁	업무직	체육강사(수영)	1명	무기계약(정년 만60세) ※ 3개월 수습	약 3,145	서류전형 인·적성전형 면접전형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내
		시설관리원	1명		약 3,145	서류전형 필기전형(NCS) 인·적성전형 면접전형	
		사무보조 (안내데스크)	1명		약 3,236	서류전형 인·적성전형 면접전형	

- 1) 근무지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분야에 따라 임용 후 순환보직 할 수 있음
- 2)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업무능력과 근무수행태도를 고려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3) 체육강사(수영) : 수영·강습 및 운영업무 등 수행
- 4) 시설관리원 : 캠핑장관리, 주차장관리, 수질관리, 마리나관리, 체육시설관리, 초소통제, 배송보조 등
- 5) 사무보조(안내데스크) : 일반 사무업무 보조(안내데스크) 등 업무 수행
- 6) **체육강사(수영)는 면접전형 진행 시 실기평가 병행**
- 7) 제수당(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수당), 자격수당 등 공사 업무직관리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8) **근로계약형태 및 계약기간**

체육강사(수영), 시설관리원, 사무보조	무기계약(정년 만60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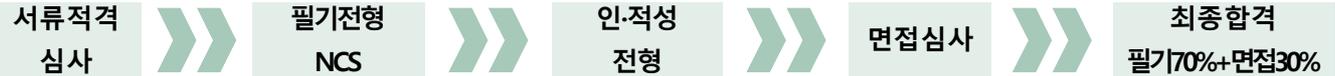
2 시험의 방법

가. 응시분야별 전형

○ 체육강사(수영)



○ 시설관리원, 사무보조(안내데스크)



※ 체육강사(수영)는 면접심사 시 실기평가 병행

나. 서류전형 [체육강사(수영) 경우 서류평가 진행]

- 채용분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공란 및 동일기호 반복 등), 필수자격 미소지(증빙자료 미첨부) 등 불합격 처리
- 체육강사(수영)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를 반영 (평가항목 :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증, 대회수상 경력, 포상내역, 취약계층 여부 등)

다. 필기시험(NCS) [시설관리원, 사무보조만 해당]

- 응시자격 적격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일반교양정도,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검정하며, 60점 미만자 불합격
-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자원관리능력 평가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합격

라. 인·적성검사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인성, 직무능력, 직무적성 등을 측정하며, 신뢰도, 허구성, 인성점수, 적성점수 등에서 부적격 판정 시 과락 판정

마. 면접전형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평가
-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보통(70점)” 이상인자 선발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미흡” 이하로 평정 시 불합격

바. 실기평가 [체육강사(수영)만 해당]

- 체육강사(수영) 해당종목 **강습 지도경력이 1년 미만(1일 8시간 근로 기준)인 자를 대상으로** 강습 진행속도, 강습동작, 도구사용능력 등 평가
※ 강습지도경력은 주당 근로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 상 업무내용과 주당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사. 최종합격자 결정

- 체육강사(수영) 서류심사 50% + 면접전형 50%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설관리원, 사무보조(안내데스크)
필기시험(NCS) 70% + 면접전형 30%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는 업무분야별 최대 3명까지 선정 가능하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근거한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및 결격사유 미보유시 최종합격자 확정**

3 응시자격

-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며 공사 정년(만60세) 범위 이내
- 나. 거주지 : 제한 없음
- 다. 결격사유

결격사유	
공통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공통 사항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기타 사항	- 전 직장에서 재직 중 직무태만, 소행불량, 상사 명령 불복종,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 면직, 계약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 재직 중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일이 있는 자

라. 업무직 업무분야별 상세자격요건

구분	업무분야	필수자격요건
공개경쟁	체육강사(수영)	<p>(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분야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구 경기지도사 2급이상 또는 생활체육지도사 3급이상 자격증)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이전 취득 자격증만 인정하며 접수 마감일까지 자격증 유효기간이 유지되어야 함 <p>[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인정범위] (아래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협회 -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수상레저종합정보(imsms.kcg.go.kr)에서 지정 교육기관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근무 및 교대근무가 가능하며 근면성실한 자
	시설관리원	<p>(우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 지도 경력자(경력산정 : 1일 8시간 근로 기준)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주당 근로시간 필수 기재 ※ 업무분야 및 주당 근로시간 미기재 시 서류전형 점수 산정 불가 ■ 관련종목 대회 수상자, 관련분야 포상 수상자 ■ 장애인,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취약계층, 새터민
	사무보조 (안내데스크)	<p>(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A자격증 소지자 또는 안내데스크 경력 1년이상 경력자(공고일 기준) <p>*. OA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ITQ, MOS,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근무,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하며 근면성실한 자

마. 필수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 필수자격요건의 자격증, 면허증 등 증빙서류는 **공고일 현재 소지자**에 한하며 증명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취득시험 합격증, 취득예정자 등 제외)
- 경력 및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제출된 증명서류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인정하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력 인정합니다.
-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건만 유효하며 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 서류전형 심사 시 업무분야 및 주당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력점수 산정 불가

바.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발급기관 연락처 및 발급자 성명 반드시 기재**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접수기간 : **2025. 4. 7.(월) 10:00 ~ 2025. 4. 14.(월) 17:00 까지**

나. 접수방법 : 화성도시공사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 우편, 방문접수 불가)

- 온라인 채용접수 URL : <https://hsuco.recruitment.kr>

다. 시험일정 :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전형별 합격자 및 시행장소는 별도 통보함

구분		체육강사(수영)	시설관리원, 사무보조
원서접수		2025. 4. 7. ~ 2025. 4. 14.	
적격심사	심사	2025. 4. 17.	
	적격자 발표	2025. 4. 22.	
필기전형 (NCS)	필기(NCS) 전형	<해당없음>	
	합격자 발표	<해당없음>	
인적성전형	인·적성 전형	2025. 5. 10.	
	합격자 발표	2025. 5. 13.	
면접전형		2025. 5. 16.	
최종합격자 발표		2025. 5.~6. 중.	
임용예정		2025. 6.~7. 중 ※ 공사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최대 1년)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함

라.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간까지 제출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직렬(분야)별 중복접수가 불가하므로 **중복지원 시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없고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불합격 처리 됩니다.**
- 경력 및 학위는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제출된 증명서에 의하여 심사됩니다.
- 필수자격요건 자격 증빙서류(자격증, 면허 등)는 반드시 첨부에 의하며, 서류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응시원서(사진첨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시 전산기재
2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채용접수 사이트 등의
3	경력증명서(영문인 경우 한글번역 첨부)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건만 인정 - 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인정 불가 ※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근무기간과 일치하여야 함. ※ 근무처, 직위(직급) 및 세부담당 업무, 발급기관의 연락처 및 발급자 성명 반드시 포함 ※ 경력증명서상 주당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분야 및 주당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심사 시 경력점수 산정 불가	스캔 파일 업로드
4	경력증명서 해당기간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공고일 이후 발급) ※ [제출서류 3]을 제출한 경우 필수 제출 사항임	스캔 파일 업로드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필수자격요건 증빙서류 모두 포함)	스캔 파일 업로드
6	포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스캔 파일 업로드
7	대외수상 경력(해당자에 한함)	스캔 파일 업로드
8	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처를 '화성도시공사'로 명시하여 제출	스캔 파일 업로드
9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스캔 파일 업로드
10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365포털 또는 VMS포털에서 발급, 스캔 파일 업로드
11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서(붙임1 양식, 해당자만 제출) ※ 미제출하는 경우 편의사항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스캔 파일 업로드

연번	제출서류	비고
※	필수 자격요건에 따라 [제출서류3]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서류4]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두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누락 될 경우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출생년도(출생월일은 반드시 명기 : [예시] **0708-*****)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6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온라인 접수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가 없으며, 접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부 파기됩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합격률(30%) 이내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에 각 5% 또는 10%씩 가산
-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각 전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합격(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보훈청에서 인정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업보호대상자	매과목 4할 이상 일 때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만점에 각각5% 10%씩 가산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실시되는 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 제출처를 화성도시공사로 명시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나. 우수자원봉사자 가점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원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가산점 차등 부여

구 분	금장	은장	동장	해바라기	기타
자격기준	기간3년이상이며 누적 3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이며 누적 2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이며 누적 100시간 이상	기간3년이상이며 누적 30시간 이상	이하
배 점	5	4	3	2	1

8 기타사항

- 가.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 출생년도 (출생월일은 반드시
명기 : [예시] **0708 -*****),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 된 경우 블라인드 후 평가진행
 - * 출생월일을 가리는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하므로 출생월일 삭제 금지
-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다. 합격자 통지 및 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원서상의 각종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달 응시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마.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 전형 단계별 응시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아. 각 전형별 안내 및 합격자 발표 등은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입사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후에도 불합격처리, 채용시 자격제한,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차.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임직원의 겸직을 금합니다.
- 카. 채용관련 비리, 부정행위,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
(recruit2@hsuco.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 타. 장애인 등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붙임1]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 지원요건, 구비서류 및 편의
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와 함께
첨부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도시공사 인사총무부(031-8012-77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 편의지원 항목

장애유형 및 등급		편의지원 항목	
지체 장애	상지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통편의지원, 답안지 대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뇌병변 장애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 편의지원, 답안지 대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시각 장애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 편의지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 요루 장애 등		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기타	임산부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편의지원 대상 및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편의 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기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지원 신청 :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 관련서류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해당 여부, 지원요건, 구비서류, 편의지원 항목을 확인 후 입사지원서 및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편의지원 내용 기재 (채용홈페이지 첨부파일 제출, 미제출시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인 증명서 등)는 스캔하여 입사 지원서 작성시 첨부파일로 제출(등록)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의사진단(소견)서에는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임신부의 경우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예시) 상기인은 임신 ()주, 필기시험 예정일(0000.00.00)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에 한함 · 확대문제지 등 : 확대문제지(118%, 150%), 축소문제지(82%), 확대답안지 (118%, 150%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답안표기) · 편의지원 신청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여부 결정은 채용홈페이지에 게재 될 예정이며, 반드시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지원 신청서 서식_입사지원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지원직종	업무직	시험구분	<input type="checkbox"/> 필기전형 <input type="checkbox"/> 인적성전형
지원업무분야		출생월일	
성 명		전화번호 (보호자는 필요시 기재)	응시자 : 보호자 :
주 소	□□□□□		
구 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시적 장애 등 <상세기술>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height: 80px; width: 100%;"></div>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등록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카드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상이부위 및 등급 확인 서류 <input type="checkbox"/> 의사 진단(소견)서		
편의 제공 요청 사항	문 제 지 (택1)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확대문제지 (<input type="checkbox"/> 118% <input type="checkbox"/> 150%) <input type="checkbox"/> 축소문제지 (<input type="checkbox"/> 82%)	
	답 안 지 (택1)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대필 <input type="checkbox"/> 확대답안지 (<input type="checkbox"/> 118% <input type="checkbox"/> 150%) <input type="checkbox"/> 아라비아 숫자 표기	
	시 험 실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별도 시험실	
	장애인 보조기구 (본인지참)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보조기구 명칭() <input type="checkbox"/> 보조기구 사용 시 필요사항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필요사항 :)	
	기 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허용 <input type="checkbox"/>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 제공 <input type="checkbox"/> 인성검사 시 필요사항 () <input type="checkbox"/>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공지	
※ 신청서 기재 시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 채용시험에서 위와 같이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도시공사 사장 귀하			